입 법 정 보

2018-10호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의 회 사 무 처
(수석전문위원실)

목 차

1.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4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4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5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5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5
6.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6
7.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6
8.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7
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개발청)····· 8
10.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9
1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 9
12.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
13.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2
14.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부)····· 13
15.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3
16.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방송통신위원회)····· 14
17. 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5
18.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환경부)····· 15
1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환경부)····· 17
20.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8
2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20
22.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22
23.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23
2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23
25.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4
2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24
27.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5
28.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6
29.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28
30.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28
31.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 29
3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29
33.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30
34.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30

35.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30
3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31
37.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환경부) ····· 32
3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 32
39.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32
40.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33
4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34
42.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청) ····· 35
4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35
4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35

정부입법 예고

1.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5. 21. • 마감일자 : 2018. 7. 2.

○ 공유토지 분할, 합병 신청, 경계청산에 관한 합의서 작성시 등에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마련 위한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의 권리변동, 주소변경 신고서 등 13종의 별지 서식에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위한 근거 마련 (안 제47조 신설)

1) 제4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 예고일자 : 2018. 5. 21. • 마감일자 : 2018. 7. 2.

○ 국가가 부여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통제된 환경에서 복무하는 의무복무자의 특수성을 감안, 의무복무 중 사망자의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여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무복무 중 사망자의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범위 확대(별표)

1) 의무복무자가 전역 2년 경과 후 복무 중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하였거나 업무과중 등으로 자살한 경우에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함.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 예고일자 : 2018. 5. 21. • 마감일자 : 2018. 7. 2.

○ 국가가 부여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의무복무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는 직무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무복무자의 국가수호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의 범위 신설 (별표 1 제3호)

1) 의무복무자의 국가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의 범위를 확대함.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 예고일자 : 2018. 5. 21. • 마감일자 : 2018. 7. 2.

○ 보훈보상대상자 등에게 개별적 여건을 고려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부양가족수당과 고령수당 지급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사람이 고령수당 지급조건에만 해당되는 사람보다 적은금액을 수령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그 차액을 보전하여 형평성 있는 지원을 하려는 것임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 예고일자 : 2018. 5. 21. • 마감일자 : 2018. 7. 2.

○ 국가유공자 등에게 개별적 여건을 고려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부양가족수당과 고령수당 지급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사람이 고령수당 지급조건에만 해당되는 사람보다 적은 금액을 수령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그 차액을 보전하여 형평성 있는 지원을 하려는 것임

6.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8. 5. 21. • 마감일자 : 2018. 7. 2.

○ 현재는 수험생의 대입 준비를 위해 사전에 공표*한 대입전형 정보를 관계법령 제정 개정 폐지 등이 있을 때에 한하여 변경 가능

* 대입전형기본사항(2년 6개월 전) / 대입전형시행계획(1년 10개월 전) 공표

예기치 못한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기 공표된 대입전형 정보를 변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 주요내용

가.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변경사유로 '천재지변 및 이에 준하는 사유'를 신설(제32조제2항 개정)

나.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유로 '천재지변 및 이에 준하는 사유'를 신설(제33조제3항 개정)

7.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8. 5. 23. • 마감일자 : 2018. 7. 2.

○ 기후·생태계에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냉매(冷媒) 관리 강화를 위하여 냉매 정의 신설, 관리대상 냉매사용기기의 확대 및 냉매회수업 등록제 도입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5096호, 2017.11.28 공포, 2018.11.29. 시행)됨에 따라 관리대상 냉매의 종류를 정하고, 관리대상 냉매사용기기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냉매회수업 등록절차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주요내용

가. 관리대상 냉매의 종류 규정(안 제10조의5)

1) 염화불화탄소(CFCs),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1에 해당하는 수소불화탄소

(HFCs) 등 관리대상 냉매의 종류를 규정

나. 관리대상 냉매사용기기의 범위 설정(안 제124조의6 및 별표 35의2)

1) 관리대상에 추가되는 식품의 냉동·냉장용 및 산업용 냉매사용기기의 정의 및 규모 등을 정함

다. 냉매회수업 (변경)등록절차 등 규정(안 제124조의10)

1) 냉매회수업 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관한 절차, 관련 제출서류 및 서식 등을 정하고, 등록증 재발급 절차 등을 정함

라. 냉매회수업자의 냉매회수결과 기록·보존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24조의11)

1) 냉매 회수시 등록된 기술인력으로 하여금 냉매 회수 의뢰업체에 냉매회수결과표를 작성하여 발급하도록 하고, 매 반기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냉매회수결과표 사본을 제출하거나 냉매정보관리전산망에 입력하여야 하며, 작성한 냉매회수결과표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나 냉매정보관리전산망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마. 냉매회수 기술인력의 교육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24조의12)

1) 냉매회수업체에 등록된 기술인력이 받아야 하는 교육의 종류, 교육경비, 교육기관 및 교육수료 결과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바. 냉매회수기준 강화(안 별표35의3)

1) 냉매의 안정적인 회수를 위한 안전유지기준과 냉매회수용기 등의 보관기준을 신설하고 냉매 회수 전·후 냉매누출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회수 및 점검기준을 추가

사. 행정처분 기준 규정(안 별표36)

1) 냉매회수업 허위 또는 부정등록, 영업정지 처분 위반 등 냉매회수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반 횟수별 행정처분 기준을 정함

8.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8. 5. 23. • 마감일자 : 2018. 7. 2.

○ 기후·생태계에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냉매(冷媒)의 안정적인 회수를

위하여 도입한 냉매회수업의 등록제도와 냉매관리전산망 구축·운영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5096호, 2017.11.28 공포, 2018.11.29 시행)됨에 따라 냉매회수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할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을 정하고, 냉매회수업 등록업무 및 냉매관리전산망 구축·운영 등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냉매회수업의 등록기준 등 신설(안 제60조의4 및 별표 14의2)

1) 냉매의 안정적인 회수를 위하여 냉매회수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을 정함

2) 냉매회수업자가 등록한 사항 중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과 변경등록 기한 등을 정함

나. 행정권한의 위탁(안 제66조제1항)

1) 냉매회수업 등록 등의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다.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15)

1) 냉매회수업자가 변경등록을 미이행하거나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금액을 정함

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개발청)

• 예고일자 : 2018. 5. 23. • 마감일자 : 2018. 7. 2.

○ 현재 지방자치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국가·지방 간 사무배분을 예시하고 있으나 개별 법령을 우선토록 한 동법 제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법령 제·개정시 국가와 지방간 임의적 사무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방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행·재정 부담을 전가하는 등의 지방 자치권 제약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제·개정 법령이 확정된 이후에는 국가와 지방간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다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제·개정 법령으로 인한 자치권 침해 방지를 위해서는 구속력 있는 사전검토가 필요함.

따라서, 정부의 법령 제·개정시 사무배분 및 자치권 침해에 대한 사전협의 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자치권을

보장하여 자치분권을 실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령 제·개정시 지방자치법 상 사무배분기준 준수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제·개정시 입법예고 전까지 자치분권 사전협의를 위한 사전평가(사무처리 주체의 적정성, 사무처리에 필요한 행·재정 확보방안 등) 실시

다. 중앙행정기관 사전평가 결과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법제처 심사 요청 전까지 담당 기관에 통보

라. 법령안 국무회의 상정시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전협의 검토의견을 첨부

10.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8. 5. 23.
- 마감일자 : 2018. 7. 20.

○ 제품의 수명주기(도입, 성장, 성숙, 쇠퇴) 및 기술진보에 따라 안전사고 빈도 위험수준이 변하므로, 이에 따라 안전관리 대상 품목별 관리 수준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조정 필요. EU FTA 협정문(전기전자 부속서)에 따라 전기용품 분야 안전관리 수준 하향 조정이 필요

○ 주요내용

가. 위해성 평가 결과 1개 품목에 대해 안전관리 수준을 상향조정하고, 6개 품목에 대해 안전관리수준을 하향조정 함

나. 최근 대용량 배터리 장착 전기차 충전을 위해 100kVA를 초과하는 충전기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전기차 충전기의 안전관리범위를 100kVA 이하에서 200kVA 이하로 확대

1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

- 예고일자 : 2018. 5. 23.
- 마감일자 : 2018. 7. 2.

○ 최근 귀농귀촌 증가 추세에 따라 산촌지역으로 이주하는 도시민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산촌지역의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으

로 인한 인력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시민의 안정적인 산촌 정착을 유도하는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산촌지역의 특화된 숲과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는 지역공동체의 활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일부 단체 등에서 위탁사업으로 귀산촌 교육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 귀산촌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며, 산촌개발사업이 주거환경 개선과 소득개발 위주로 추진되고 있어 지역의 산림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공동체사업을 발굴하기엔 한계가 있음. 이에 귀산촌의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 산림자원의 특화발전을 지원하여 산촌의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촌개발사업의 정의 규정(안 제2조제8호 신설)

1) “산촌개발사업”을 “산촌개발 및 특화발전사업(이하 “산촌특화사업”이라 한다.)”으로 변경하여 지역산림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산촌 정착, 거주민 삶의 질 개선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정의하도록 함

나. 산촌진흥기본계획 수립내용 변경(안 제23조제2항)

1) 산촌진흥기본계획에 도시민의 산촌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다. 산촌활성화지원센터 지정 및 취소의 근거 마련(안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 신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따라 산촌활성화지원센터를 지정하여 도시민의 산촌 이주에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 사회적경제 육성 및 산촌특화계획 수립 컨설팅 등 산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령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도록 함

라. 산촌개발사업 명칭 변경 및 특례적용의 근거 마련 등(안 제25조, 안 제26조, 안 제27조 및 안 제29조)

1) “산촌개발사업계획”을 “산촌특화사업계획”으로, “산촌개발사업”을 “산촌특화사업”으로 변경하고, 산촌특화사업과 관련

되는 산림사업의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산촌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산촌특화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사업시행지역에 편입되는 국유림의 대부·사용허가·매각·교환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산촌활성화지원센터 보고·검사 및 청문의 근거 마련(안 제29조의6 신설 및 안 제30조제5호 신설)

1) 산촌활성화지원센터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검사하도록 하고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처분에 대하여 청문절차를 두게 함

12.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8. 5. 24.
- 마감일자 : 2018. 7. 3.

○ 주요내용

가.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는 자에 대해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간 소득역전방지를 위해 2만원 단위로 감액하여 지급하던 것을 소득인정액에 비례하여 감액하도록 변경하여 소득인정액이 소폭 인상됨에도 불구하고 급여가 상대적으로 크게 감액되던 문제를 수정하고, 2만원으로 고정되어 있던 최저연금액을 기준연금액의 10%수준으로 함으로써 매년 기준연금액 인상에 맞추어 인상될 수 있도록 변경함

나.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2018년 9월부터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이 25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기초연금액의 적정성 평가를 통한 급여수준 조정의 실익이 없어, 최초로 실시하는 적정성 평가를 2018년에서 2023년으로 조정함

다.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재정보전금과 조정교부금의 명칭을 조정교부금으로 통일한 점, 세종특별자치시 출범(2012)이후 3년이 지난 점을 고려하여 별표2의 내용을 수정함

라. 타법 개정사항 및 기타 경미한 자구를 수정함

13.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8. 5. 24.
- 마감일자 : 2018. 7. 3.

○ 축산물이력제 적용범위에 ‘수입돼지고기’를 포함하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16.12.27.)과 수입돼지고기 이력제 시행(‘18.12.28)에 따른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축산물이력제 범위에 포함되는 축종의 농장경영자가 농장식별번호 발급 신청시 정확한 축산 농장경영자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축산업허가증 등 관련 서류를 첨부토록 하고 신청서에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를 받음으로써 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16.12.27.) 및 수입돼지고기 이력제 시행 (‘18.12.28)에 따라 축산물이력법 하위규정 내 ‘수입돼지고기’ 부문 조항정비(안 제15조제1항, 별표8, 별표14, 별지 제8호, 제21호서식 개정)

1) 이력관리의 대상이 되는 축산물의 범위를 ‘모든 쇠고기 및 국내산 돼지고기’에서 ‘수입산 돼지고기’를 추가하는 하위규정 정비

나. ‘농장식별번호 발급신청서’의 증빙서류 제출,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의 동의서 근거 보완(별표2, 별지 제1호서식 개정)

1) 축산물이력제 범위에 포함되는 축종의 농장경영자가 농장식별번호 발급신청시 제출서류에 축산업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제출토록 하여 농장경영자의 정보를 일치시키고 정확한 정보 수집 근거 마련(단,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이 없는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증 등으로 확인)

2) 농장경영자의 개인정보, 사육정보 등을 수집·이용 및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동의서의 서명을 통해 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등에 대한 근거 마련

14.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부)

- 예고일자 : 2018. 5. 25.
- 마감일자 : 2018. 7. 4.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 제15581호, 2018. 7. 18. 시행)에 따라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 출원인 적격이 완화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인 한편, 상표권자 등의 신청이 있을 때 등록증을 전자적 형태로 제작된 전자파일 등록증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출원인적격 완화 (안 제28조, 제88조)

1)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 출원인 적격이 기존의 ’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 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법인’ 으로 완화함

나. 전자파일 등록증 도입에 따른 발급 규정 신설 (안 제55조, 제57조, 제58조)

1) 상표권자 등의 신청이 있을 때 등록증을 전자적 형태로 제작된 전자파일 등록증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함

15.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8. 5. 28.
- 마감일자 : 2018. 7. 9.

○ 현재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사회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행 1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법률 제15445호, 2018.3.13. 공포, 2018.9.14.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등을 신고·고발한 경우 지급하는 포상금의 기준 및 방법·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8조의3 신설)

나.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행 1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안 별표1)

16.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방송통신위원회)

• 예고일자 : 2018. 5. 28. • 마감일자 : 2018. 7. 9.

○ 홈쇼핑사업자가 허위·과장 방송으로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그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사항 전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상품 구매 소비자에게 개별 통지하는 의무가 신설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방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 의무 이행 기준, 방법, 과태료 부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홈페이지 게시 의무와 소비자 개별통지 의무 이행 기준 마련 (안 제66조의4 제1항 신설)

1) 과징금 처분 및 법 제100조 제1항 각호의 제재조치명령 종류에 따라, 위반내용의 정도가 중한 과징금 부과,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관계자 징계의 경우에는 게시 및 통지의무를 모두 이행하도록 하고, 주의 및 경고의 경우에는 게시 의무만을 이행하도록 하여, 제재조치 수준별로 기준을 달리하여 이행 기준 마련

나.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의 방법 (안 제66조의4 제2항 및 제3항 신설)

1) 법률 위임에 따라 홈페이지 게시 방법 및 개별 통지 방법을 구체화하여 규정함

다. 게시 및 통지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안 별표4 제2호 구목 신설)

1) 법률에 과태료 부과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홈페이지 게시 및 통지 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500만원, 의무 이행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17. 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8. 5. 29. • 마감일자 : 2018. 7. 9.

○ 일정규모 이상의 국외 석유자원의 탐사 및 개발사업은 이사회 의결 전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국석유공사법」이 개정(2018. 4. 17. 공포, 2018. 10. 18.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평가위원회의 심의 대상 사업규모, 자산변동 규모, 평가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자격,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

○ 주요내용

가. 평가위원회의 심의 대상 사업규모, 자산 및 주식(지분을 포함한다)의 거래금액, 지급보증액 또는 출자전환되는 대여금 등 자산변동 규모 등을 규정(안 제8조의3 신설)

나. 평가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자격, 운영 등을 규정(안 제8조의4 신설)

18.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8. 5. 30. • 마감일자 : 2018. 7. 9.

○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5511호, 2018.3.20. 공포, 2019.1.1. 시행)됨에 따라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환경부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위해성평가의 기준 및 절차(안 제4조 ~ 제5조)

1) 위해성평가의 실시 순서 및 우선순위, 고려하여야 하는 화학물질 관련 정보 등을 규정함. 또한 매년 위해성평가 계획을 수립

하고 그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함을 명문화함.

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관리 절차(안 제6조 ~ 제10조)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기 위한 세부 절차와 확인 후 신고 절차를 규정함. 또한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기 위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

다. 살생물물질의 승인신청 및 평가 절차 등(안 제12조 ~ 제17조)

1) 살생물물질 승인, 변경승인 또는 변경신고, 물질동등성 인정을 위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 또한 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총 15개의 살생물제품유형을 제시함.

라. 살생물제품의 안전용기 및 포장, 제조 보관시설 기준(안 제24조 ~ 제25조)

1) 살생물제품이 준수하여야 하는 안전용기 및 포장(어린이보호포장 포함) 기준을 제시함. 또한 살생물제품 승인을 받은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제조 보관시설 기준을 규정함.

마. 살생물제품의 승인신청 및 평가 절차 등(안 제26조 ~ 제31조)

1) 살생물제품 승인, 변경승인 또는 변경신고, 제품유사성 인정을 위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

바.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의 표시(안 제32조 ~ 제33조)

1) 살생물제품이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고 살생물제품과 살생물처리제품의 표시 시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

사.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정보공개(안 제34조)

1)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에 관한 정보 중 물리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 분류 및 표시, 효과 효능 등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아. 표시 광고의 제한(안 제41조)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품에 무해한, 무독성, 환경친화적, 인체 동물친화적 문구와 이와 유사한 표현을 표시 광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1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환경부)

- 예고일자 : 2018. 5. 30.
- 마감일자 : 2018. 7. 9.

○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5511호, 2018.3.20. 공포, 2019.1.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2조 ~ 제5조)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정하고 제척 기피 회피 및 해임 해촉의 근거를 마련함. 또한 위원장의 역할과 정기회의 주기, 임시회의 개최 요건 등을 규정함.

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관리 방법 및 절차(안 제6조 ~ 제9조)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 과정에서 시험검사기관이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 및 방법을 고시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 또한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상세 범위를 규정함.

다. 살생물물질의 승인신청 및 평가 절차 등(안 제11조 ~ 제14조)

1) 살생물물질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와 최종 승인 시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 또한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정하고 화학적 조성,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물질동등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함.

라.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안 제15조)

1) 기존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을 기준으로 기존살생물물질에 대하여 최대 10년의 승인유예기간을 부여함. 또한 제조 수입량, 유 위해성, 국내외 사용 및 규제현황 등을 고려하여 승인유예기간을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마. 살생물제품의 승인신청 및 평가 절차 등(안 제18조 ~ 제22조)

1) 살생물제품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와 최종 승인 시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 또한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정하고 전성분 및 배합비율, 유 위해성, 효과 효능 등을 고려하여 제품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함.

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사후관리 절차(안 제27조 ~ 제28조)

1)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에 새로운 위해성이 발견된 경우 조치권고 등에 대한 세부절차를 정하고 조치권고에 대한 사업자의 후속조치에 대하여 규정함. 또한 회수명령 등에 대한 세부절차를 정하고 회수명령에 대한 조치계획서, 조치결과보고서 제출 등 사업자의 후속조치에 대하여 규정함.

사. 과징금의 산정 및 부과 등(안 제29조 ~ 제31조)

1) 과징금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보다 세부적인 산정기준은 고시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 또한 과징금 납부대상자의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규정함.

아. 시험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안 제33조 ~ 제34조)

1) 시험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을 정하고 보다 세부적인 기준은 고시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 또한 시험 검사기관의 지정, 변경지정, 재지정을 위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

20.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환경부)

- 예고일자 : 2018. 5. 30.
- 마감일자 : 2018. 7. 9.

○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조속히 확보·관리하기 위하여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하려는 기존화학물질은 제조·수입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다음 등록유예기간의 적용을 받아 ’30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두 등록토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512호, 2018.3.20. 일부개정

및 법률 제15584호, 2018.4.17. 일부개정, 2019.1.1. 시행)됨에 따라 세부적인 기존화학물질의 신고 및 변경신고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제공을 확대하기 위하여 발암성 물질 등은 반드시 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존화학물질 신고 및 변경신고 방법 등 신설(제3조 개정)

1)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기 전에 신고서를 화학물질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고, 제조·수입량의 톤수 범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이전에, 그 외 변경사항(분류·표시, 용도 등)은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토록 함.

나. 화학물질의 등록신청 방법 개정(제5조, 별표1 개정)

1) 위해우려가 낮아 제출자료가 일부 생략되는 기존화학물질(건강·환경 유해성 분류·표시가 없는 경우, 소비자 용도로 신고한 자는 제외)은 양에 관계없이 1~10톤에 해당하는 유해성 시험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수송분리중간체도 최대 1~10톤에 해당하는 유해성 시험자료(연간 1천톤 이상 제조되는 경우)를 제출토록 함.

다. 신규화학물질의 신고신청 및 통지 규정 신설(제6조의2 신설)

1) 100kg 미만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선임사실 신고증, 자료보호신청서 등을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신고해야 하고, 과학원장은 신고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최대 14일)에 통지해야 함.

라.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 방법과 절차 등 개정(제17조 개정)

1) 기존화학물질을 신고·변경신고한 결과 소비자 용도로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야 하며, 하나의 명칭 또는 식별 정보를 가진 화학물질이라도 고분자화합물로서 특성이 명확히 달라 동일 물질로 간주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음.

마.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규정 개정(제35조 개정, 제35조의2 신설)

1)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제공 확대를 위하여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내용에 따라 건강 및 환경 유해성이 나타나는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함유량 등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보를 미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신설.

2) 발암성·돌연변이성·생식독성 물질, 유해화학물질 등 인체 위해 우려가 높은 물질은 유해성 분류·표시내용에 따라 혼합물 분류기준 이상으로 함유된 경우에는 반드시 정보를 제공해야 함.

바. 위해우려제품의 관리 관련 규정 삭제(제43조, 제44조, 제47조, 제48조 등 삭제)

1) 위해우려제품을 포함한 생활화학제품의 관리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위해성평가의 방법, 미고시 위해우려제품 함유물질에 대한 자료제출, 회수 등의 조치명령 등 규정 삭제

2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8. 5. 30.
- 마감일자 : 2018. 7. 9.

○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조속히 확보·관리하기 위하여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하려는 기존화학물질은 ’30년까지 유해성과 유통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모두 등록토록 하고, 미등록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512호, 2018.3.20. 일부개정 및 법률 제15584호, 2018.4.17. 일부개정, 2019.1.1. 시행)됨에 따라 세부적인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유예기간을 설정하고,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송분리중간체 정의 신설(제2조제1호 개정)

1) 소비자에게 노출되지 않는 비분리·현장분리 중간체는 화평법상 등록면제되거나 제출자료가 간소화되고 있으나 EU 등에서 등록자료를 간소화하고 있는 수송분리중간체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

이 없어, 수송분리중간체 정의(국내 화학 제조공정 중간단계에서 생성되어 다른 생산현장으로 이송, 전량 사용·소멸)를 신설하여 등록신청 시 일부 제출자료를 생략토록 함.

나.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유예기간 설정(제10조 개정)

1) 연간 10톤 이상 100톤 미만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경우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간 1톤 이상 10톤 미만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등록토록 함.

다. 등록대상으로 지정 가능한 화학물질의 국내 총 유통량 기준 (제10조의3 신설)

1) 개별업체 기준으로는 연간 1톤 미만으로 등록대상이 아니나 국내 연간 총 제조·수입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기존화학물질, 개별업체 기준으로는 연간 0.1톤 미만으로 등록대상은 아니나 국내 연간 총 제조·수입량이 1톤을 초과하는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대상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음.

라. 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 규정 개정(제11조 개정)

1) 국외로 전량수출하는 경우 양에 관계없이 등록을 면제토록 하고, 수평균분자량이 1만 미만인 고분자화합물은 미반응 단량체를 기준으로 유해화학물질, 중점관리물질, 신규화학물질이 중량비 0.1%이상 잔류하는 경우에 등록토록 함.

마. 화학물질의 등록신청시 제출자료의 생략 규정 개정(제13조 개정)

1) 위해우려가 낮은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등록서류를 간소화하여 합리적으로 등록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기존화학물질 제조·수입자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신고·변경신고한 결과 건강·환경 유해성 분류·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시 제출자료를 일부 생략토록 함, 다만 해당 물질을 소비자 용도로 신고 및 변경신고한 자는 제출자료 생략 대상에서 제외함.

바. 과징금 부과기준 등 규정 신설(제15조의2 신설)

1) 법에 따라 기업 총 매출액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이 경우 총 매출액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가 해당 위반행위를 한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함.

사. 화학물질 정보제공의 함량 기준 신설(제20조의2 신설)

1) 등록·신고된 화학물질은 함량에 관계없이 정보를 제공토록 하되, 등록되지 않은 유해화학물질은 혼합물의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해당 물질의 분류·표시내용에 따른 혼합물 분류 기준 이상으로 함유된 경우에 정보를 제공토록 함

22.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8. 5. 30.
- 마감일자 : 2018. 7. 9.

○ 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온라인으로도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의료광고 모니터링 결과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 및 의료광고 모니터링 제출기한을 명시하는 등 개정의료법 위임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록 열람 등의 요건(안 제13조의3)

1)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온라인 등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이 경우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공인전자서명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온라인 본인 인증이 가능토록 개선

나.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안 제16조)

1) 전자의무기록 추가 기재 수정을 한 경우 접속기록 보관을 위해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함

다. 의료광고 모니터링(안 제47조)

1) 모니터링 결과를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심의를 받았는지, 심의 받은 내용대로 광고하였는지를 포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시설, 운영 등 기준(안 별표1의2)

1) 간병지원인력 유형을 진료과목, 업무특성 등에 따라 병동지원인력, 재활지원인력 등으로 구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매일 1회 이상 비상연락장치 정상 가동 여부 점검토록 의무화

마. 출생증명서, 사망진단서, 처방전 서식(안 별지 제7호・제8호)

1) 출생증명서에 출생아 신장 작성란 추가, 사망진단서에 사망자의 등록기준지 작성란 삭제

2) 처방전에 처방의약품의 코드, 환자 본인부담률을 작성하도록 함

23.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 예고일자 : 2018. 5. 30.
- 마감일자 : 2018. 6. 19.

○ 정부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여행업의 등록자본금 기준을 한시적(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으로 50% 완화 시행하고 있는데 계속적인 창업 활성화를 위해 완화한 제도를 상시화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여행업 등록 자본기준을 한시 완화하는 단서조항 삭제(안 제5조 별표1).

1) 여행업의 등록자본금 기준을 완화하는 규정을 한시 규정에서 상시 규정으로 전환

2) 일반여행업(2억원 → 1억원), 국외여행업(6천만원 → 3천만원), 국내여행업(3천만원 → 1,500만원) 대상으로 완화된 등록 자본금 기준을 각각 상시 적용하고자 함

2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8. 5. 30.
- 마감일자 : 2018. 7. 9.

○ 사회적 약자인 노무용역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근로조건 이행계획 위반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을 강화하고 공정타당한 예정가격 산정을 위해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요건 등을 규정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문공사 등의 지역제한 경쟁 입찰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근로조건 이행계획 위반시 입찰제한 강화(안 별표2, 별표3, 별표4)

1) 근로조건 이행계획 위반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을 강화

(1개월→3개월)함

나. 원가계산용역기관 역량강화(안 제9조)

1) 현재 계약예규에 규정된 원가계산용역기관 설립요건 등을 시행규칙으로 상향하여 규정함

다. 지역제한 경쟁 입찰 대상공사 확대(안 제24조)

1) 전문공사 등에 대한 지역제한 경쟁 입찰 대상금액을 10억원까지 확대함

25.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5. 30.
- 마감일자 : 2018. 7. 10.

○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명칭 사용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해외건설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4956호, 2017. 10. 24. 공포, 2018. 4. 25. 시행)됨에 따라 법률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업무 위탁기관 확대 등 일부 조항을 실정에 맞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책센터 업무위탁 기관 확대)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의 업무 위탁기관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를 추가(안 제19조의4)

나. (과태료 부과기준) 지원공사의 명칭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위반행위에 대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증액하여 부과(안 제36조 및 별표 4)

2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 예고일자 : 2018. 5. 30.
- 마감일자 : 2018. 7. 9.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469호(2018.3.13. 공포, 9.14. 시행) 및 법률 제15611호(2018.4.17. 공포, 10.18. 시행)]됨에 따라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서면 실태조사 방해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설정(시행령 별표2 개정)

1) 개정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5611호, 2018.4.17. 공포, 10.18.시행)이 서면 실태조사 방해 행위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추가하면서 그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는바, 현행 시행령에 규정된 다른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맞춰서 서면 실태조사 방해 행위를 한 사업자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횟수에 따라 금액이 가중되도록 설정함.

나. 신고포상금 지급규정 보완(시행령 제26조 개정)

1) 개정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5469호, 2018.3.13. 공포, 9.14. 시행)이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장임차인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위법행위로 규정함에 따라서, 동 행위를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법위반 행위에 추가함.

2) 또한, 법위반 사업자의 현직 임직원 중 해당 위법행위에 관여한 자는 법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함.

다. 시정명령 받은 사실 공표명령의 방법·절차 규정 신설(시행령 제27조의2 신설)

1) 대상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공정위 예규)」이 규정하고 있는 공표명령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시행령에 상향(上向)하여 규정하고자 함.

27.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 예고일자 : 2018. 5. 31.
- 마감일자 : 2018. 7. 30.

○ 「의료기기법」 개정(법률 제14330호, 2016. 12. 2. 공포)에 따라,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제도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공급내역 보고절차

및 방법 등 법령에서 위임된 세부사항을 정하는 한편, 보고 의무가 있는 의료기기 부작용의 범위에 외국에서 발생한 부작용 발생사례를 포함하여 규제의 예측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피해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료기기 부작용 보고의 범위 명확화(안 제51조)

1) 의료기기취급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부작용 보고 대상이 불명확하여 국내에서 허가·인증·신고된 의료기기관련 부작용이 외국에서 발생한 경우 보고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혼선이 우려됨

2) 이에, 국내외에서 발생한 의료기기 부작용 또는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는 사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대상임을 명확하게 하여 규제의 예측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나.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항목·방법 등 마련(안 제54조의4 등 신설)

1) 「의료기기법」 개정(법률 제14330호, 2016. 12. 2. 공포)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업자·수입업자·판대업자·임대업자가 의료기관, 의료기기 판매업자·임대업자에게 의료기기를 공급한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됨

2) 이에,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제도 시행에 필요한 보고항목 및 방법 등을 규정하여 제도 시행의 발판을 마련하고, 의료기기 공급정보를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기 사후 관리 및 판매질서의 유지 등에 기여하려는 것임

28.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 예고일자 : 2018. 6. 1.
- 마감일자 : 2018. 7. 11.

○ 감염병의 대유행 또는 방사선비상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허가 등을 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의료기기법」이 개정(법률 제15486호, 2018. 3. 13. 공포)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사유·

절차, 허가 등 면제대상 의료기기의 범위 등 법령에서 위임된 세부사항을 정하는 한편, 의료기기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과징금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과징금 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기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료기기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안 제3조의3 신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할 경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사항을 법령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의료기기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사항은 행정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어 이를 법령에 명확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이에, 의료기기 관련 중요사항을 조사·심의하는 의료기기위원회 위원의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사항을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의료기기위원회 운영 및 조사·심의 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나. 감염병 대유행 등의 경우 허가 등 면제 요청절차 등 신설(안 제14조)

1) 「의료기기법」 개정(법률 제15486호, 2018. 3. 13. 공포)에 따라 감염병 대유행 또는 방사선 비상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국내에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로 하여금 제조하거나 수입하게 할 수 있는 등의 근거가 마련됨

2) 이에, 동 제도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사유·절차, 허가 등 면제 대상 의료기기의 범위 및 사후처리기준 등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제도 시행의 발판을 마련하고, 감염병 등 대유행 등의 경우에 의료기기가 신속하고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다. 의료기기 과징금 산정기준 명확화(안 별표1)

1) 의료기기 업무의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 시 한 업체에 두 개 이상 업무의 정지처분이 같은 날에 부과되는 경우

과징금 한도액(5천만원) 적용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행정 업무의 혼선 등 초래가 우려됨

2) 이에, 의료기기법 위반 업체의 처분일이 같은 경우로서 처분 대상이 여러 품목이거나 업무의 정지처분이 병과된 경우에는 과징금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과징금 한도액(5천만원)을 적용함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9.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8. 6. 1.
- 마감일자 : 2018. 7. 11.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에 따라 이와 연계된 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부가급여액을 조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기초급여액 인상을 반영하여 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부가급여액 “28만9960원”을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른 당해연도 기초급여액에 8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변경

나. 공적이전소득 관련 「공무원 재해보상법」 추가 및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연금 명칭 변경

30.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8. 6. 1.
- 마감일자 : 2018. 7. 13.

○ 최근 레지오넬라증 연간 환자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레지오넬라균 발생률이 높은 목욕·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잔류염소기준, 저수조 청소 등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레지오넬라증 감염을 예방하고 위생수준을 향상시키려 함. 또한, 일부 숙박업소에서 청소용구를 혼용하거나 객실 내 비품 등을 청결히 하지 않아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객실 등 청소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국민들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욕조수를 순환하여 여과시키는 경우(“순환여과식”) 욕조수 수질기준에 잔류염소농도, 수소이온농도, 레지오넬라균 수치를 추가하여

레지오넬라증을 예방하고 욕조수 수질을 개선하고자 함(별표2)

나. 순환여과식 욕조수의 경우 매년 1회 이상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하도록 하여 수질상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온도 및 유리잔류염소를 매일 1회 이상 측정·기록하도록 함(별표4)

다. 모든 숙박업소 및 목욕업소 저수조를 반기 1회 이상 수도법령에 따른 방법으로 소독 청소 하도록 하고, 온수는 60℃ 이상에서 저장하도록 함(별표4)

라. 객실 욕실 등을 청소할 경우에는 청소할 대상에 적합한 청소도구를 각 용도별로 구분하여 사용하도록 함(별표4)

31.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

• 예고일자 : 2018. 6. 1. • 마감일자 : 2018. 7. 11.

○ 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수행중인 기상산업 실태조사는 조사요건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하위법령에 조사요건을 구체화 할 수 있도록 위임 조문을 신설하여 조사 대상자들이 조사 내용 및 절차 등의 예측이 가능하도록 하여 불편을 경감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안 제12조제3항 신설)

3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8. 6. 4. • 마감일자 : 2018. 7. 16.

○ 승객 안전에 관한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하여 유선장 도선장 및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유선 도선의 선실 또는 통로에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내용의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5527호, 2018. 3. 27. 공포, 2018. 9. 28.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승객 안전에 관한 매뉴얼 미비치 시 과태료 부과 (안 별표 3)

1) 승객 안전에 관한 매뉴얼을 유 도선장 및 유 도선에 비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1차위반 100만원, 2차위반 200만원, 3차위반 300만원)

33.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8. 6. 4.
- 마감일자 : 2018. 7. 16.

○ 감척 대상을 허가 받은 어선에서 어구(정치성 구획어업)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462호, 2018. 3. 13. 공포・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감척 대상을 어선에서 어구까지 확대(안 제2조・제3조, 제4조 관련 별표 1)

1) 감척 대상을 허가 받은 어선에서 어구(정치성 구획어업)까지 포함함

34.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 예고일자 : 2018. 6. 4.
- 마감일자 : 2018. 7. 16.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개정*(‘18.2.6)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5.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8. 6. 4.
- 마감일자 : 2018. 7. 16.

○ 예산낭비신고센터를 활성화 하고 국민참여 강화를 위해 포상금 최대 지급한도를 확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과

관련된 제안 등을 한 자에 대한 포상금 최대 지급한도를 확대함(안 제51조의2)

1) 포상금 지급한도 : (현행) 300만원 이하 → (개정안) 600만원 이하

3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8. 6. 4.
- 마감일자 : 2018. 7. 16.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17.11.28)됨에 따라 학교전담경찰관 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미이수 보호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에 관련한 법률상의 미비점*이 보완되어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보호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징수 주체를 교육감으로 규정. 이에 학교전담경찰관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및 과태료 징수와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 징수절차 등을 대통령령에 마련하여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및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학교전담경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설(안 제31조의2 신설)

1) 학교전담경찰관의 운영주체를 경찰청장으로 명시

2) 학교전담경찰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은 청소년 상담, 소년 업무 경력자 등을 고려하여 선발하도록 함

3) 학교폭력 예방 활동, 학교폭력 가 피해 사실 확인 및 대상 학생 선도 관리 등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을 명시함

4) 학교폭력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과 학교의 협력 의무를 명시함

나. 가해학생 보호자의 특별교육 미이수에 대한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신설(안 제35조 신설)

다. 법 조항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제32조 개정)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조항 신설(제20조의6)로 기존 법 조항이 변경(제20조의6 → 제20조의7)됨에 따라 법 제20조의6을 참조한 시행령 제32조의 조문을 정비합니다.

37.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8. 6. 5.
- 마감일자 : 2018. 6. 7.

○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2018. 6. 8. 공포 ·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였던 하천수의 사용허가 신청 및 사용신고에 필요한 사항, 하천수 사용자가 기록·보관하여야 하는 사항, 하천수 허가수량의 조정 비율 및 하천수 사용에 관한 분쟁조정에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의 열람이나 출입조사 시 사전통보 등 하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

- 예고일자 : 2018. 6. 5.
- 마감일자 : 2018. 7. 16.

○ 방송사업자간 분쟁으로 인해 방송중단 등 시청권의 중대한 침해가 예상되는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현행법상 방송분쟁조정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청권 보호를 위한 방송분쟁조정 제도 개선(안 제91조제4항 신설)

1) 동법 제91조(조정의 개시) 제4항에 동법 제91조의7에 따른 방송의 유지·재개 명령이 내려진 방송 분쟁에 한하여 방송분쟁조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을 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9.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6. 5.
- 마감일자 : 2018. 7. 16.

○ 최근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미시공 및 부실시공 등에 따른 입주민 피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부실업체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통해 공동주택 전반의 품질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대되고 있음. 이에 주택법 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업주체에게만 적용 중인 선분양 제한 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가목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이행방안을 마련하여 차질 없이 제도를 시행하고, 이를 통해 공동주택 부실시공 방지 및 품질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사업주체 및 시공자가 「주택법 시행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선분양을 제한(안 제15조제3항 개정)

1) 공동주택의 미시공 및 부실시공에 따른 입주자 피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부실업체에 대한 엄격한 관리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이에 따라 현행 주택법 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업주체에 한해 적용하는 선분양 제한 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가목, '18.3.13)

2) 적용 대상은 「주택법」 상 사업주체에서 사업주체 및 시공자까지 확대하고, 선분양 제한 사유도 「주택법」상 영업정지에서 「건설산업기본법」상 영업정지 및 「건설기술 진흥법」상벌점 처분을 받은 업체까지로 확대

나.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영업정지 또는 벌점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 기간 및 벌점 정도에 따라 선분양 제재 수준을 구체적으로 규정(별표 4 신설)

40.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6. 5.
- 마감일자 : 2018. 7. 16.

○ 현행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는 감리자가 사업주체로부터 공사감리비를 직접 지급받고 있어 적극적인 감리업무 수행이 곤란해 공동주택 품질 저하 등의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사업주체가 공사감리비를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사전 예치하도록 「주택법」 제43조제6항이 새로이 신설됨에 따라 공사감리비 사전 예치와 관련하여 세부 절차를 마련, 신설된 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 이를 통해 공정한 감리업무 수행 도모와 더불어 공동주택 부실시공 방지 및 품질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사감리비 사전 예치 제도 도입(안 제18조의2 신설)

1) 공동주택 부실시공 또는 품질 저하로 인한 입주민 피해민원 사례 증가에 따라 공동주택 품질 제고를 위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의 공정한 감리업무수행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

2) 그러나, 현행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는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사업주체로부터 직접 공사감리비를 지급받고 있어 적극적인 감리업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공사감리비를 사전에 예치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주택법」 제43조제6항 신설, '18.3.13)

3) 이에 따라 공사감리비 사전예치제도 이행을 위한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하여 관련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공정한 감리업무 수행을 도모하는 동시에 공동주택부실시공 방지 및 품질 확보를 달성하고자 함.

나. 「주택법 시행규칙」 전부 개정('16.8) 시 공용면적 관련 조문이 "제2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제2조제2호가목"으로 변경됨에 따라 인용 조문 현행화(안 제13조의제3항제2호가목 전단)

다. 「임대주택법」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15.8)됨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거나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등에 주택 유형을 종전 공공임대주택에서 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하면서, 부칙 제6조제2항의 경과조치 규정을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반영하고자 함.(안 별지 제15호, 제18호, 제23호 서식)

4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8. 6. 7.
- 마감일자 : 2018. 7. 17.

○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각종 자료·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42.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청)

• 예고일자 : 2018. 6. 7. • 마감일자 : 2018. 7. 17.

○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 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합리적 관리를 통한 문화재 보존관리와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 할 경우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종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유지 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조정 안 신설(안 제13조제5항)

4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8. 6. 7. • 마감일자 : 2018. 7. 17.

○ 학자금 상환유예 대상자 확대 및 자발적 상환액을 의무상환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 등을 시행령에 마련하고자 함 (이상 시행령)

○ 주요내용

가. 학자금 상환유예 대상자 확대(안 제10조의2 제1항 및 제8항)

나. 학자금 상환유예 신청 시기(안 제10조의2 제2항 단서 신설)

다. 학자금 상환유예 기간(안 제10조의2 제4항 개정)

라.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에 대한 기준(안 제10조의2 제7항 신설)

마. 학자금 납부통지 대상 사유 명확화(안 제21조 제11항 신설)

4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8. 6. 7. • 마감일자 : 2018. 7. 17.

○ 학자금 상환유예 대상자를 확대하도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에 따라 실직·폐업·육아휴직자가 학자금 상환유예 신청할 수 있도록 ‘학자금 상환유예 신청서 서식’ 등을 변경하고, 행정기관이 행정처분 결정사항을 통보할 때 불복절차(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을 안내하여 국민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이상 시행규칙)

○ 주요내용

가. 실직·폐업·육아휴직자의 학자금 상환유예 신청서 서식 등을 변경(안 제1조의3 및 별지 제2호서식)

나. ‘결정서’ 서식에 불복절차(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추가(안 별지 제82호서식)